

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 원 명	대법원
사건번호	2018다○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손해배상
원 고	주식회사◇◇◇◇◇◇◇◇	피 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8. 5. 11.	비 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고는 1992년부터 ●●체라는 이름으로 총 420개의 서체파일을 개발한 회사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서체파일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작한 서체파일은 지적재산권이 인정된다 주장함. - ■■■■■■■■ 교직원들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를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(사례 26건)하여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제2항에 의거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액 배상을 청구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음. 		
주 문	<p><3심 판결주문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<p><1심 판결주문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5.2.8.부터 2016.8.19.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<p><2심 판결주문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		
판결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(저작권법 제2조제16호)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.(대법원2001.6.29. 선고99다23246판결) 이 사건 서체파일들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 		

상황 책임이 있다.

- 저작권법 제126조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침해사례의 내용 및 횡수, 그 밖에 이 사건 서체 파일을 프로그램으로서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인 이미지를 이용한 것 자체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5,000,000원으로 산정한다.